

검 토 보 고 서

2003.7.10.(목)

- 결론위원 임석규입니다.
- 2003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
-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규칙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
- 2002년 12월 26일과 2003년 6월 23일 각각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과 동법시행령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수행하는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의 재경(裁定)신청 사무를
- ★ 재경신청(裁定申請) : 위원회가 인과 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조사·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(불복시 소송제기)
-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처리토록 부여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
 - 우리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그 운영사항과 재경신청 관련 수수료를 반영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.
- 주요골자로는
-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,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하며(안 제2조)
 - 재경신청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정하는 것입니다.(안 제3조 별표)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환경분쟁조정법(개정 주요골자)

* 참고자료

-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을 부여함에 따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,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명, 재정의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함(법 제7조제2항, 제8조제3항·제4항 및 제42조).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, 조정절차는 당해 사건의 소관 행정청의 소속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6조제2항).
- 조정절차 중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(법 제21조 및 제22조제2항).
-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종·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(법 제45조 제3항 신설).

*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(개정 주요골자)

-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인 다리·탑 등에 의한 일조박해를 환경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함(영 제2조).
- 종전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만이 환경분쟁의 재정사무를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의 재정사무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등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사무의 범위를 조정함(영 제3조).
- 환경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요건중 분사무소의 설치요건을 없애는 등 환경단체의 조정신청을 지나치게 제한하던 요건을 완화함(영 제20조).

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동 조례안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, 상위법인 환경조정분쟁 조정법과 동법시행령이 2002년 12월과 2003년 6월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변경 조정된 내용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※ 상위법 개정 주요골자 : 별첨자료 참고

- 그런데 금회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전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
 - 목적과 정의 및 해석을 정하는 총칙적 규정과 위원회 설치, 임기, 주요기능, 수당 등 예산수반을 정하는 실체적 규정, 그리고 수수료 등을 산정하는 보칙규정, 또한 기득권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정하는 부칙규정 등
 - 조항별 상호간의 부조화(기존의 조항 삭제 등)로 이해성과 명료성이 떨어지며
 - 법 체계가 혼잡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을 줄 수 있고
 - 또한 일정 형식의 법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만을 보완하여 반영하면 될 것인데
 - 어떤 사유로 전체체계를 대상으로 수정 하였는지 그 개정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